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51,210,278	79,536,308
일반회계	2,413,405,704	72,402,171
특별회계	237,804,574	7,134,137
공기업특별회계	189,838,896	5,695,1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813,438	2,514,4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025,458	3,180,764
기타특별회계	47,965,678	1,438,970
주택사업특별회계	109,902	3,2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784,949	413,548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19,000	21,57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43,868	103,316
교통사업특별회계	26,903,265	807,098
대지보상특별회계	8,065	242
수질개선특별회계	2,920,394	87,6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6,235	2,287

제 2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77,80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한도액은 『83,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